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37
----------	-------

제출년월일 : 2025. 4.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한 사항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 발주기관 적용범위 구체화(안 제3조)
- 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 다. 부실공사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 라. 별지 서식 신설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5. 3. 13. ~ 4. 2.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5)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수정의결(2025. 4.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를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조 중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연·출자한 기관이**”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을 “**아니한 경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현장 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정지”를 “중지”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실공사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 위치	
	공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용				
증빙서류				
비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략)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4. (생략)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연·출자한 기관이 ---.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

-----.

1. (현행과 같음)
2.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

3. 4. (현행과 같음)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아니한 경우 -----

----- 않을 ----- .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 2에 따라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현장 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

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부실공사 측정)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다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0조(부실공사 측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 증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실공사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 위치	
	공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내용				
증명서류				
비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감사담당관 장아현
연 락 처	02-3153-8144